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95호
- 나. 제 출 자 : 맹진영 의원 외 10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2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2월 26일

2. 제안이유

- 조례에 인용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삭제함(안 제1조)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지원시책과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현장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중소기업시책과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의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는 중소기업벤처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8에서 시·도지사가 매년 육성계획의 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

석 결과를 추가하여 이를 매년 상반기 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일반 현황과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분야별로 표본을 추출하고 모수 추정(parameter estimation)의 방식을 통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세부사항은 붙임자료 2 참고).
- 한편, 통계청은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중소기업 범위로 가공, 재편하여 중소기업 일반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전국사업체조사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3 참고).

라.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에 폐지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전국단위로 중소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부족함이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시에 서울시 차원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현황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은 22,000개(일반항목 4,000개, 제조업 7,500개, 건설업 1,500개, 서비스업 9,000개)로 그중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은 3,200여개(14.5%)에 불과하여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시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와 실태조사의 결과가 특성상 조사 시점보다 일정시간 이후에 발표된다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 제7조 제5항은 서울시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현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12월 31일 기점으로 하는 통계와 실태조사의 결과가 2017년 12월말에 발표되어 실제 결과가 활용되는 시점과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

<붙임자료 1> 관련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4(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과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의18(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① 시·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년 중소기업실태조사 위탁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I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8년 중소기업실태조사
2. 위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3.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과 구조개선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4.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5. 사업예산 : 917백만원
6. 위탁방식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 (2018. 2. 20.)

III 2018년 주요 추진 계획

1] 표본설계 개편

1. 현행 표본설계
 - 중소기업 범위기준 변경(종사자수→매출액)에 따라 전산업의 매출액을 대표값으로 하여 표본설계 실시
 - 모집단은 2014년 기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개인기업)와 「기업체모집단」 자료(법인기업)에 중소기업 패널DB의 매출액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
 - 업종별 매출액 총액대비 90% 내외 수준에서 전년도 모집단 수를 고려하여 매출액 5억원 이하 기업과 매출액 상한기준 초과기업 제외 (단, 규모가 영세한 숙박및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3억원 이하 제외)

2. 표본설계 개편(안)

- 모집단은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활용
- 전년도 매출액 변수 매칭을 위해 활용한 중소기업 패널DB가 기업등록부 DB로 통합됨에 따라 동 DB의 매출액 변수를 전국사업체조사와 매칭하고 매출액을 대표값으로 하여 표본설계 실시
 - '16년 기준 기업등록부 DB가 개정된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구축됨에 따라 '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매칭된 기업등록부 DB의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모집단 구축 예정

2] 조사업체수 변경

1. 현행 조사업체수

업종	모집단	조사업체수	추출률
제조업	129,320개	7,500개	5.80%
건설업	44,658개	1,500개	3.36%
서비스업	315,403개	9,000개	2.85%
일반항목	489,381개	4,000개	0.82%

2. 조사업체수 변경(안)

- 일반항목 조사업체수는 전년 수준 유지 (4,000개)
- 시계열 항목의 경우 금년도 예산 및 조사상황 등을 감안하여 17,500개 수준에서 조사 실시
 - 단, 2018년 표본설계 결과에 따라 세부업종의 조사업체수 조정 가능

<2018년 조사업체수(안)>

업종	시계열항목 조사업체수	일반 항목 조사업체수	업종별전체 조사업체수
제조업	7,500개	4,000개	-
건설업	1,000개		
서비스업	9,000개		
전체	17,500개	4,000개	21,500개

3] 조사항목 변경

1. 현행 조사항목

		일반실태	재무정보	인력실태	CSR 경영실태
시계 열 항목	제조업 (48개)	○ 공장 ○ 원부자재구매 ○ 설비투자 ○ 수위탁거래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인력현황 - 직종별 현인원 - 부족인원/채용인원 - 재직연수 - 연령/학력 ○ 이직/입직현황 ○ 인력확보 어려운 사유 ○ 이직방지 노력	○ CSR 도입여부 ○ CSR 도입이유 ○ CSR 경영활동 ○ CSR 경영도입 및 실천시 애로 사항 등
	건설업 (40개)	○ 사업장 ○ 수주 및 실적 ○ 건설투자 ○ 하도급거래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서비스 (38개)	○ 사업현황 ○ 설비투자 ○ 사업실적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원가명세서		
		인력활용실태		해외진출실태	
일반 항목	전업종 공통 (34개)	○ 신규인력 채용시 중요요건 ○ 인력채용시 선호경력/학력/지급연봉 ○ 교육·훈련 주요 형태 ○ 중소기업 인식개선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유/애로사항 ○ 시행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 수출여부 및 수출방식 ○ 수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보유여부 ○ 수출시 애로사항 ○ 해외진출 계획여부 및 시기 ○ 해외진출 유형 및 지역 ○ 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사항	

2. 조사항목 변경(안)

-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항목은 유지하되 인력정책 이슈부분 조사항목은 조사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조사항목 설계
- 사업전환촉진법에 의한 사업전환 관련항목 조사 실시
 - 단, 2017년 최초 조사되었던 사회적책임(CSR) 경영 항목은 사업전환항목 추가(격년 실시)로 인한 조사업체 응답 부담 등의 사유로 2018년 조사항목에는 제외하고 향후 사업전환 항목과 교차하여 격년으로 실시 예정
- 전년도 조사항목 중 수준점검이 곤란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 재검토 후 조사항목에 반영

4] 추진일정

	세 부 추 진 내 용	비 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계획(안) 협의 • 모집단 및 표본설계 구상 	
2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설계 • 표본설계 및 매출액 모집단 구성 연구용역 실시 •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구상 • 예비조사 실시(업종별 업체를 선정, 현장 면담) 	표본설계 연구용역 관련기관 의견수렴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확정 • 조사원 관리지침서 및 조사요령서 작성 • 통계작성승인(통계청)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수행업체 선정 • 조사원 교육 • 조사표 내용 검토 	
6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실시(6월~9월) • 통계처리 SAS 프로그램 개발 - 결과표, 내검 프로그램 작성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조사표 보완조사 실시 및 실사 완료 • 통계처리 프로그램 오류 확인 및 수정 • 주요 항목 수준점검 및 결과 분석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1차 보고 • 전문가 회의 • 보고서 작성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결과 공표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사업완료 보고 	

※ 상기 조사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세부시행계획

1. 목적

-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2. 연혁

- 199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 2009년: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 2016년: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차 조사) 통합 실시
- 2018년: 제25차 조사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7호, 1995.12.22.)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4.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

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약 464만개)

-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산업(A~U) 중 자가소비 생산 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19개 산업 포괄

5. 조사항목

- 공통항목: 13개 항목, 시도별 맞춤형 특성항목 1~4개 항목
-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⑭시도별 특성항목「참고1」

6.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 응답자 요청 시 우편조사, 배포조사 등 병행 실시

7.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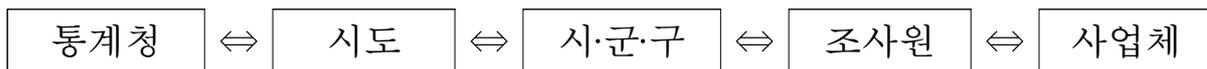
- 조사기준일: 2017.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2017.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2018. 2. 6. ~ 3. 7.(기간 중 25일)

8. 동원인력

- 공 무 원: 약 600명(통계청 40명, 지자체 560명)
- 조사요원: 약 9,921명
 - 총관리자 252명
 - 조사관리자 1,106명
 - 조사지원관리자 268명
 - 조사원 7,246명
 - 입력내검원 1,049명

9. 조사체계

- 주관기관: 통계청
- 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



10. 소요예산: 148억원

(단위: 백만원)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전체	4,315(100%)	12,563
인건비	3,602(83%)	12,563
조사용품 및 홍보비 등	538(13%)	-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등 기타	175(4%)	-

11. 결과공표

- 잠정결과 공표 : 2018. 9월
- 확정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2018. 12월

※ 통계청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

12. 주요 추진일정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훈련 : 2018. 1. 2. ~ 1. 30
- 업무량 배정 등 : 2018. 2. 2., 2. 5.
- 현장조사 실시 : 2018. 2. 6. ~ 3. 7.(기간 중 25일)
- 지자체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2018. 3. 15. ~ 4. 5.
-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 : 2018. 4. 9. ~ 11.30.
- 잠정결과 공표 : 2018. 9월
- 확정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2018. 12월